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가합52917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변론 종결2016. 3. 24.

판결 선고2016. 4. 14.

주 문

1. 가. A과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A에게,
(1) 별지 제1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2. 9. 접수 제105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2) 별지 제1목록 제3항 내지 제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2. 10. 접수 제231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3) 별지 제1 목록 제18,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2. 11. 접수 제178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4) 별지 제1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2. 9. 접수 제95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5) 별지 제1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2. 11. 접수 제113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A과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A에게,

(1) 별지 제2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2. 17. 접수 제130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2) 별지 제2 목록 제4항 내지 제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2.

17. 접수 제278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3) 별지 제2 목록 제19항 내지 제2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2. 17. 접수 제120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4) 별지 제2 목록 제2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2. 17. 접수

제65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5) 별지 제2 목록 제27, 28, 2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2. 17.

접수 제203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증약정일자	2014. 5. 30.	2014. 9. 23.
신용보증금액	1,332,800,000원	90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5. 30.부터 2015. 5. 29.까지	2014. 9. 23.부터 2015. 9. 22.까지
대출일	2014. 5. 30.	2014. 9. 23.
대출금액	1,666,000,000원	1,000,000,000원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소외 회사가 2015. 2. 5.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기업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17. 기업은행에게 2,201,268,67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7,800,110원을 회수하여 먼저 대지급금에 충당한 후 남은 4,001,510원을 위 대위변제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현재 남은 대위변제금은 2,197,267,167원(2,201,268,677원 - 4,001,510원)이고, 확정손해금은 1,315원이다.

다. A의 재산처분행위

1) A은 2015. 2. 6.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과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공제조합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별지 제1목록 1, 2번 기재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2. 9. 접수 제10599호
같은 목록 3 내지 17번 기재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2. 10. 접수 제23102호
같은 목록 18, 19번 기재 부동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2. 11. 접수 제17898호

별지 제1목록 1, 2번 기재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2. 9. 접수 제10599호
같은 목록 20번 기재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2. 9. 접수 제9542호
같은 목록 21번 기재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2. 11. 접수 제11399호

2) A은 2015. 2. 6. 피고 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별지 제2목록 1, 2, 3번 기재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2. 17. 접수 제13010호
같은 목록 4 내지 18번 기재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2. 17. 접수 제27807호
같은 목록 19 내지 25번 기재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2. 17. 접수 제12010호
같은 목록 26번 기재 부동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2. 17. 접수 제6532호
같은 목록 27, 28, 29번 기재 부동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2. 17. 접수 제20368호

라.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한편 소외 회사는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6.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5. 4. 16.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29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가 2015. 2. 5.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즉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5. 4. 17.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A의 채무초과

갑 제9, 11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은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 가액의 합계(피고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64억 4천만 원 정도이다)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2,232,800,000원
2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8,521,040,000원
3	외환은행에 대한 채무	800,000,000원
4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1,000,000,000원
5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519,276,000원
합계	13,073,116,000원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을 위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공제조합은, A이 소외 회사가 신규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제1 각 부동산을 피고 공제조합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위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다 제3호증의 1 내지 을다 제5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공제조합에게 이 사건 제1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공제조합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된다.

㉠ 피고 공제조합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약 2달 후 소외 회사에게 2015. 4. 30. 보증채권자 제일모직 주식회사, 보증금액 291,370,200원인 하자보수보증서, 2015. 7. 27. 보증채권자 현대건설 주식회사, 보증금액 250,252,200원인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공제조합은 그 이전에 소외 회사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만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2015. 1. 2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난 직후에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1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㉔ A이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새로운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소외 회사가 발급받은 하자보수보증서는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를 하고 사용검사까지 마친 후에 도급인에게 제출하는 서류로 이를 발급받는 것이 소외 회사가 변제력을 갖게 되는 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A이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는 소외 회사가 새로이 물품을 공급받아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A은 소외 회사의 위 피고들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것인 점, 소외 회사는 2015. 1. 29. 이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위 피고들로부터 새로이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공제조합에게 이 사건 제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공제조합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기재만으로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공제조합은 A에게 이 사건 제1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A에게 이 사건 제2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영학

판사이진희

판사김선희

별지